



2021

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뮤지컬 QnA

기본사항 | 지원받는 예술인력의 인건비는 얼마인가요?



1인 기준, 실수령액 월 145만원으로 5개월 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공고상의 월 180만원은 근로자·사용자분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
기본사항 |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


채용되는 예술인력은 7월~11월 총 5개월 간 근무를 진행하게 되며,
매월 근무 종료 이후 익월 중 월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*상세 지급일 별도 안내

기본사항 | 예술인력은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한가요?



[단체]로 신청 시, 2인 ~ 최대 5인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*필요시 1인 가능
[개인그룹]으로 신청 시, 1인 ~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*개인 대표자 포함

기본사항 |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예)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(해당사항 모두 제출)

기본사항 | 예술인력 직무 분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?



공연 실연분야

- 실연자 (배우, 연주자 등)
- 창작자 (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음악감독 등 제작 실연인력)
- 상주 스태프 (오퍼레이터, 무대크루 등 공연 진행 상주스태프)

공연 지원분야

- 공연 기획·제작·국제교류 등
- 경영·일반 (총무, 세무, 인사 등)
- 공연 홍보·마케팅 (하우스, MD, 티켓 포함)

[세부 질의응답]

Q : 실연분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?

A : 단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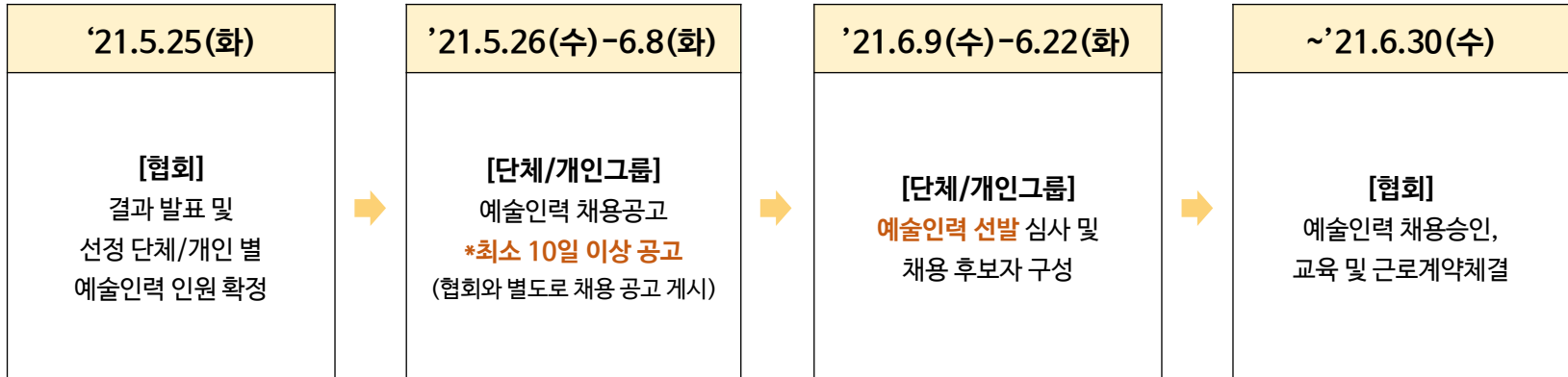
Q : 의상 스태프를 채용하고 싶은데, 어떤 직무 분야에 해당하나요?

A : 분장, 의상 등의 스태프는 제작 실연인력으로 공연 실연분야로 신청하면 됩니다.

기본사항 | 예술인력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예술인력 채용공고 및 선발



단체 선정 이후 해당 단체에서 예술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협회로 채용 후보자 서류를 제출합니다.

예술인력은 7월~11월 총 5개월 간 선정 단체에서 근무하며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.

[채용 후보자 필수 제출서류]

- 후보자의입사지원서(양식)1부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전체) 1부, 채용자명단 통보서(양식) 1부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양식)1부, 채용자 표준근로계약서(양식) 1부 *채용 확정 후 협회가 예술인력과 직접 전자계약 체결 예정
-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(해당 시)

기본사항 | 근무 중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?

예술인력은 본 사업의 지원기간(7월~11월) 동안 선정단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주 근무지에서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
*근무 외 프리랜서 활동은 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기본사항 | 이미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 중인 곳이 있습니다. 예술인력으로 채용되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?

선발된 예술인력은 한국뮤지컬협회 소속으로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.

*타사업장과 중복 가입 불가

기본사항 | 신청서 내용에는 어떤 것을 기입하면 되나요?

[추진과정]

- 신청하고자 하는 작품(프로젝트)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.
- 사업목적, 세부계획(시놉시스, 참여인원), 월별 추진일정 등

[결과발표] *필수기입

- 지원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발표 계획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.
- 공연 외 활동(워크샵, 제작준비 등) 도 온라인 공개, 발간물(대본, 악보 등), 영상 기록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결과발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
[인력선발기준]

- 신청 작품(프로젝트)에 필요한 인력 채용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.
- 선정이후 채용공고에 삽입될 내용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.

[인력운영계획]

- 본 사업의 지원기간(7월~11월) 동안 단체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예술인력이 실제 진행하게 될 업무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주세요.

신청자격 | [단체] 2020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입니다.
올해도 신청 가능할까요?

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(연극, 뮤지컬, 음악, 전통예술, 무용)
참여 단체의 경우 올해도 단체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자격 | [예술인력] “20년 3차 추경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 불가”의
20년 3차 추경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
2020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(5개 장르)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을 제외하고
3차 추경사업(방역지킴이 등)에 참여한 인원은 예술인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***2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(20년 12월~21년 6월)에 참여 중인 단체와 예술인력도 신청 가능합니다.**

신청자격 |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사업기간(7월~11월) 이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기간 내 공연을 올리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
지원기간(7월~11월) 내 뮤지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작준비, 워크숍, 영상제작, 리서치 등 다양한 형태의 뮤지컬 예술활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***단, 추후 결과보고 발표 시 활동 결과물 증빙자료 필수 제출입니다.**

신청자격 | [단체] 신규 사업자입니다.
2019~2020년도 단체 활동 실적이 없는데 단체로 신청가능한가요?

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규 사업자대표 개인의 활동실적을 기재하여
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심의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 | [단체] 2021년 타기관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중복신청/선정이 가능한가요?

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**동일 작품(프로젝트)**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1. 2021 중복 선정 불가

- 1)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(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)
- 2)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(한국공연관광협회)
- 3)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(한국콘텐츠진흥원)

2. 2021 중복 선정 가능

- 1)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*후순위 선발
- 2)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*후순위 선발
- 3)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(고용노동부) *동일 작품(프로젝트) 제외
- 4) 청년디지털 일경험 지원사업(고용노동부) *동일 작품(프로젝트) 제외

신청자격 | [예술인력] 국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A에 참여하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. 예술인력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나요?

일회성 사례비 형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은 예술인력은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자격 | [단체] 어린이 뮤지컬 제작사입니다. 어린이 공연단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지원기간(21년 7월~11월) 동안 뮤지컬 분야의 공연예술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 단체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자격 | [개인그룹] 으로 신청 준비 중입니다.
개인그룹 대표자(본인) 인건비 신청도 가능한가요?

1인 이상의 개인 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이 있다면
개인대표자 본인을 포함하여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2020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으로 90일 이상 참여한 개인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 신청불가

신청자격 | [개인그룹] 대표자입니다.
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?

업태무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그룹 대표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공연예술단체 대표자라면 [단체]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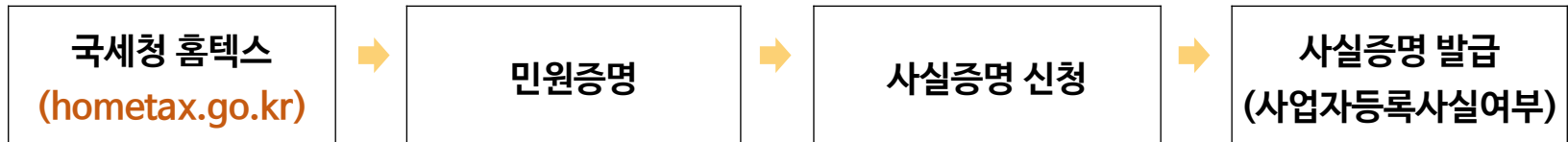
*단,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휴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신청자격 |

[개인그룹] 대표자가 필수로 제출하는 <사업자등록사실여부>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?



1. <사업자등록사실여부> 서류 발급 방법



2. <휴/폐업사실증명> 증빙서류 발급 방법



[개인그룹 대표자 신청자격]
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개인그룹 대표자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,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는 해당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
- 온라인사실 증명 신청 후 국세청 홈텍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(*평일 기준이며, 발급 완료 시 안내문자 전송)
- 발급시점: 반드시 지원신청서 제출(4/19 ~ 5/3) 월 발급자료 제출

근무지 | 근무지가 여러 곳입니다.
신청서 상 주 근무지는 1곳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?

신청서 상 주 근무지는 **대표 1곳**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최종 단체 선정 시 주 근무지 별도 안내 및 수합 예정입니다.
*** 자택 근무는 불가합니다.**

근무지 | 사무실이 없는 개인 창작자입니다.
예술인력들의 근무지를 자택으로 설정해도 되나요?

본 사업은 **선정 단체의 주 근무지에서 주 30시간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 인력지원 사업**입니다.
자택은 근무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. 사무실, 연습실, 작업실 등 반드시 자택 외 근무지를
설정 하셔야 하며, 근무기간 내 협회 및 상위기관 측 근태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
결과발표 | 사업 기간 종료 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및 결과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5개월 간의 예술활동 결과물은 결과보고서와 함께 협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*** 결과보고서 양식 선정 이후 별도 안내**

[활동 결과물 제출]

1. 공연을 진행한 경우

포스터, 프로그램북, 예매처 상세페이지, 영상링크 등 예술인력의 활동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각종 홍보물 증빙

2. 공연 외 활동(워크숍, 제작준비 등)의 경우

대본, 악보, 음원, 영상자료, 회의자료 등 반드시 5개월 간의 예술활동 결과물로 증빙 가능한 완성된 결과물 형태로 제출

***단순 사진자료 및 시놉시스 등의 미완성 결과물은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.**